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제명을 ‘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률’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풍수해보험법」(법률 제00000호, 0000.0.0. 공포, 00.00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00000호, 0000.00.00. 공포, 00.0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”을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풍수해보험법」”을 “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풍수해보험법」”을 “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“풍수해보험사업”을 각각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사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풍수해보험”을 각각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풍수해보험”을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)”를 “(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풍수해보험관리지도”를 각각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)”을 “(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

제2항 중 “풍수해보험관리지도”를 각각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「풍수해보험법」 제16조의2”를 “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 제16조의2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“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”를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「풍수해보험법」 제25조의2제1항”을 “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 제25조의2제1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풍수해 보험관리지도”를 “풍수해·지진재해 보험관리지도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풍수해보험관리지도”를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풍수해보험법」 제25조의2제1항”을 “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 제25조의2제1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풍수해보험관리지도”를 “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”로 한다.

(표지 앞면)

손해평가인 자격증



행정안전부

(표지 뒷면)

비고: 색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표지: 검은색

2. 글자 및 무궁화무늬: 금색

70mm×110mm[고급비닐 220g/㎡]

비고: 표지 뒷면의 색상은 검은색으로 한다.

70mm×110mm[고급비닐 220g/㎡]

(제1면)

주의사항

- 손해평가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손해평가인자격증을 항상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.
- 손해평가인 자격취득자는 주소와 자격취득 현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

63mm×103mm[백상지 150g/㎡]

(제2면)

손해평가인 자격증

자격번호 :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주 소 :

2cm×2.5cm

위 사람은 「**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**」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합격 연월일 : 년 월 일

발급 연월일 : 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

관인

63mm×103mm[백상지 150g/㎡]

(제3면)

보수교육

연월	교육기간	확인
.	일 ~ 일	.
.	일 ~ 일	.
.	일 ~ 일	.
.	일 ~ 일	.
.	일 ~ 일	.
.	일 ~ 일	.
.	일 ~ 일	.
.	일 ~ 일	.

63mm×103mm[백상지 150g/㎡]
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명칭 또는 상호	설립일자	
	대표자 성명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 (FAX, E-mail)	
기술 인력	총 계 ()명	기술자격자	기술사(), 기사(), 산업기사()
		학력·경력자	박사(), 석사(), 학사(), 전문학사()

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 제2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·지진재해 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	없 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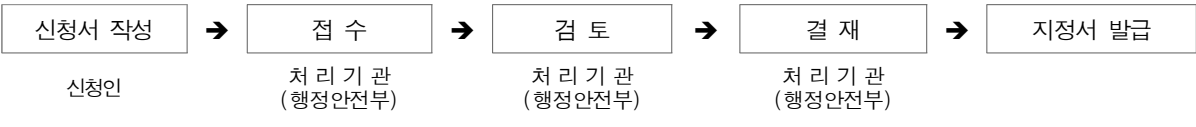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제 호
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서

1. 명칭 또는 상호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4. 법인등록번호:
5. 지정연월일:

위 기관을 「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」 제25조의2제1항과 같은 법
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○○년도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
작성 대행자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 직인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부 칙

이 규칙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</u>	<u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</u>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풍수해보험법</u> 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
제2조(보험사업 약정의 체결) 행정안전부장관은 「 <u>풍수해보험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<u>풍수해보험사업</u>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제2조(보험사업 약정의 체결) --- ----- 「 <u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</u> 」 ----- ----- <u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사업</u> ---- ----- ----- 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<u>풍수해보험사업</u> 의 운영에 관한 사항	5. ----- <u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사업</u> -----
제4조(손해평가인 교육)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(이하 “손해평가인 교육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,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	제4조(손해평가인 교육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
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1. 풍수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
2.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
3. 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6조(손해평가인 보수교육) ①
(생략)

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내용으로 한다.

1. 풍수해보험의 종류별 약관
2. 3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8조(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
대행자의 지정절차) ① 법 제25
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
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
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
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
하여야 한다.

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
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
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
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
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
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

-----.

1.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-----
2.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-----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손해평가인 보수교육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-----
2. 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
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)

① -----
----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
지도 -----

-----.

②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
도 -----

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9조(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) 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,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.

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.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) ①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-----

-----.

-----.

② -----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-----

-----.